「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평창군 공공 발간물 광고 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정비하고, 조례 제명 및 조문 등의 띄어쓰기를 바로잡아 개인정보 보호와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

❍ 조례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 정비: 제명, 안 제1조 및 제2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❍ 본 조례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, 광고 신청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. 또한 조례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은 자치법규의 표기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